

의안번호	5092-1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제출 연월일	2026. 10. 2.

수정 제출 내용

1. 수정 제출 이유

-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일부 수정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부적응 치유와 학교 적응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2026년 9월 17일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및 성과공유회 반영 등 일부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함

2. 수정 제출 내용

- 기 제출한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9월 16일 제출되어 9월 17일 실시한 성과공유회 및 성과평가 자료를 반영하여 수정 제출함

① 붙임 자료 수정 내용

원안	수정안
○ (참고1) 관련 법령 ○ (참고2) 2027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개요) ○ (참고3) 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현황 및 위탁 절차 ○ (참고4) 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실적	○ (참고1)~(참고4) 동일 ○ (참고5) 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성과평가 및 성과공유회 자료

3.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

-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쪽 「붙임5 추가」

원 안			
없음			
수정안			
☐ 성과평가 및 성과공유회 개요 ○ (장소/일시)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26. 9. 17.(목), 15:30 ~ 17:30 ○ (대 상) 민간대안교육 위탁기관 5개 기관 ○ (참 석 자) 교육청 관계자, 성과평가위원*, 위탁기관 대표 및 실무자 * 총5명: 외부위원(4명), 내부위원(1명)			
☐ 평가결과 및 평가 기준			
기관	총점/평균	평가	비고
예노아	452 / 90.4	우수	
사계절	480 / 96	매우 우수	우수기관
가온누리	466 / 93.2	우수	
사이치유	461 / 92.2	우수	
세종YMCA	434 / 86.8	우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95점 이상	85점 이상 ~ 95점 미만	75점 이상 ~ 85점 미만	75점 미만
☐ 평가방법: 정성평가(70%) + 정량평가(30%) + 가점(5%) ○ 정성평가(70%): 성과공유회 ※ 9월중 기관별 10분 내외 성과발표 - 운영결과 중간 보고서(25점), 교육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25점), 성과제시 구체성 및 학생성장 우수사례, 프로그램 효과성(20점) ○ 정량평가(30%): 서류검토 - 기관 운영 적성성(10점), 예산 집행 적정성(10점), 기관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10점) ○ 가점(5%): 학교정책과 - 교육청 정책사업 협조, 우수사례 발굴, 지역사회 연계, 언론보도 등			
☐ 결과 활용 ○ (우수기관 선정) 우수기관 1개 기관 선정, 차년도 기관선정 시 고려 ○ (컨설팅 실시) 미흡한 기관 및 분야 개선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 그 밖에 제안이유, 필요성 및 타당성, 내용은 위 2. 수정 제출 내용 및 최종 수정동의안(붙임) 기준으로 함께 정비됨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092-1
----------	--------

제출연월일 : 2026. 10. 2.

제출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제안이유

-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5092)을 제출한 후,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및 성과공유회 반영 등 일부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 내용

-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5092) 일부 수정
 - －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및 성과공유회 반영(2026. 9.17. 실시)
 - (장소/일시)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26. 9. 17.(목), 15:30 ~ 17:30
 - (대상) 민간대안교육 위탁기관 5개 기관
 - (참석자) 교육청 관계자, 성과평가위원*, 위탁기관 대표 및 실무자

3. 수정 동의안

- (붙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수정안) 전문 1부.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092-1
----------	--------

제출연월일: 2026. 10. 2.
제 출 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제안 이유

- 우리교육청은 공립형 대안학교(위탁형)인 ‘세종늘벗학교’ 및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맞춤형 대안교육을 제공하여,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부적응 치유와 학교 적응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내실화 운영 지원을 통해 위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함
-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무위탁)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지원 등)에 의거 전문적인 대안교육 위탁교육이 가능하며 예산지원이 가능함.

· 제8조(사무위탁)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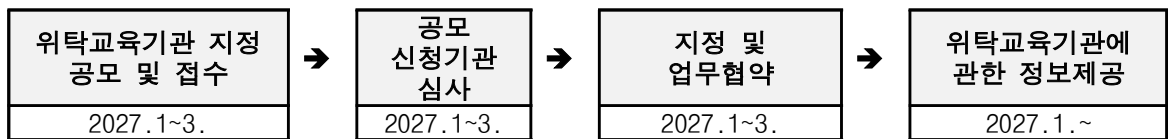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9)

· 제5조(지원 등)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 학생 수와 위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1)

-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교육안전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민간위탁대상 사무 현황

- (위탁명)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 (위탁개요)
 - 지정기간 : 2027. 3. 1 ~ 12. 31
 - 지정규모 : 초등 1학급(급당 10명 이내), 중등 5학급(급당 15명 내외)
 - ※ (위탁금액 산출기준) 초등:급당 67,000천원, 중등:급당 90,000천원
 - 지정절차



- 위탁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학업 중단 위기로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실시(출석인정)

기본 사항	■ 위탁기간: 1학기(4.1.~7.31.), 2학기(9.1.~12.31.) 학기제 ■ 학급당 인원수: 초 10명 이내, 중등 15명 내외											
위탁 대상	■ 세종시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학업중단 위기로 학교복귀 지원을 위한 위탁교육이 필요한 학생											
위탁 절차	<table><tr><th>학교</th><th>교육청</th><th>위탁기관</th></tr><tr><td>상담 3회 이상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심의</td><td>→ 대안교육 위탁준비 디딤돌 프로그램 (중등 3,4,5,8,9월) - 위탁기관 정원 내 선정</td><td>→ 위탁준비교육 완료학생 대상 익월 1일 위탁교육개시 및 종료</td></tr><tr><td>교육청 공문발송</td><td>위탁결정(학교공문) 및 위탁기관 연계</td><td>· 교육청: 정산서, 보고서제출 · 학교: 출결, 생활기록부보조부 송부</td></tr></table>			학교	교육청	위탁기관	상담 3회 이상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심의	→ 대안교육 위탁준비 디딤돌 프로그램 (중등 3,4,5,8,9월) - 위탁기관 정원 내 선정	→ 위탁준비교육 완료학생 대상 익월 1일 위탁교육개시 및 종료	교육청 공문발송	위탁결정(학교공문) 및 위탁기관 연계	· 교육청: 정산서, 보고서제출 · 학교: 출결, 생활기록부보조부 송부
학교	교육청	위탁기관										
상담 3회 이상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심의	→ 대안교육 위탁준비 디딤돌 프로그램 (중등 3,4,5,8,9월) - 위탁기관 정원 내 선정	→ 위탁준비교육 완료학생 대상 익월 1일 위탁교육개시 및 종료										
교육청 공문발송	위탁결정(학교공문) 및 위탁기관 연계	· 교육청: 정산서, 보고서제출 · 학교: 출결, 생활기록부보조부 송부										
교육 과정	■ 초등 주당 24시간/중등 주당 24~30시간 확보 (보통교과 10시간 이상, 대안교과 10시간 이상, 창체 4시간 이상) ■ 위탁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학업 성적 관리	■ 평가는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필 및 수행평가, 성적처리, 고교학점제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학생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학적 및 출결 관리	■ 학적은 소속학교에서 관리 ■ 위탁교육기관은 학생 개인별 출결사항을 매 익월 5일까지 소속학교에 통보 및 위탁종료 후 1주일 이내 출결·생활기록부 보조부를 소속학교에 송부 ■ 학생의 희망 등 및 여러 가지 사유로 위탁교육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탁기관은 소속학교와 협의를 거쳐 수탁을 중도 해지하고 교육청에 보고함											

생활 지도	■ 소속학교장과 위탁교육기관장은 긴밀히 협조하여 위탁학생의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소속학교 관리자또는 담당자 1회 이상 위탁기관 방문 및 학생 관리 필수 ■ 위탁학생의 담임교사 월 1회 학생과의 소통(전화·문자·SNS)필수
교육 환경	■ 위탁교육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학습 공간 확보(교실, 상담실, 특별실, 사무실 등) ■ 시설의 안전성 및 기관 주변환경의 적절성 확보

3. 민간위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같은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4. 필요성 및 타당성

- (필요성)
 - － 심리·정서 위기 및 학교 부적응(문제행동, 등교 거부 등)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맞춤형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 필요
 - ※ 중등 위탁대안교육 배정 현황('26년 1학기 66명, 2학기 82명)
 - －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위탁기관으로서 대안교육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한 사업으로 2026 성과평가 및 성과공유회 결과 학생성장 가능성 및 기관운영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 시도별 민간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현황

(2026. 9. 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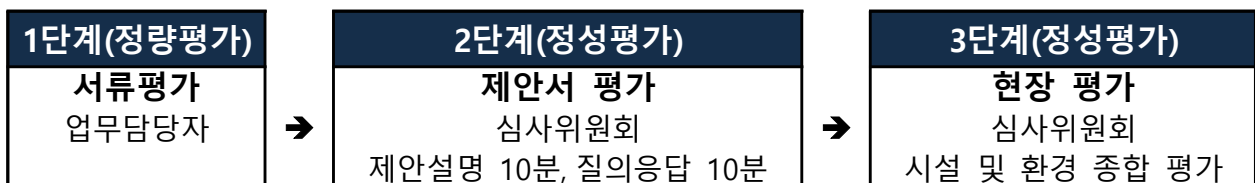
순	예산 항목	시도수	시도 명	기 타
1	민간위탁(320-02)	12	전북, 충남, 경기, 대구, 제주, 광주(전남) 대전, 부산, 경북, 경남, 인천, 울산	민간위탁사업비
2	민간경상보조(320-01)	3	충북, 서울, 강원	지방보조금

○ (타당성)

- 법령 및 조례, 타시도 현황 및 민간위탁사무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 추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자격)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사회단체 등
- (공개공모) 위탁교육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일 이상의 공모 기간을 운영하고, 공모 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 (심사위원회)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 교육청 내부 위원 및 대안교육 전문가 등 외부위원(5~7인)
 - (내용) 2단계 제안서 평가 및 3단계 현장 평가
- (심사절차)



- (심사기준) 심사기준에 따라 기관의 적정성 여부 심사

❖ 교육목표의 적정성

-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실천교육목표 설정 여부
-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교육이념·교육내용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 대안교육 철학 및 이념의 적절한 제시 여부

❖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능력

- 일과 운영의 적절성
- 연간 교육 운영 계획서의 적절성
- 보통교과, 대안교과, 창의적체험학습의 편성의 적절성
- 학생중심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 **학생 생활 및 안전**

- 학생 안전교육 연간 계획 수립(7대 안전교육 표준안)
- 학생 생활교육 관리 규정 수립 (필수)
- 학생 및 학부모 상담 계획(전문상담사 운영 여부)
- 학생 소속학교와의 연계 관리 방안
- 사고발생 시 응급 계획 수립

❖ **교육 환경 및 시설**

- 위탁교육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학습 공간 확보(교실, 상담실, 특별실, 사무실 등)
- 교실은 학급당 인원(초등 10명, 중등 15명 내외) **수용 가능한 규모***의 전담 교실 확보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학생 수별 기준면적 참고
- 교육에 필요한 도서·기자재·기구 등의 교구 확보
- 기관 주위 학습 유해시설 여부
-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냉·난방 시설, 소방시설 등 적정 여부
- 환기 및 교육환경(소음 등) 적절성
- 교육시설의 독립성(타 용도 병행 여부)
- 시설 안전의 적절성(최근 1년 이내의 각종 안전점검표) 등

❖ **운영 담당자(지도자) 확보 기준**

- 학급당 1인의 운영담당자(학생관리, 출결관리, 기타 학생관련 교육행정지원)
- 보통교과(국어,사회,한국사 등)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선 임용
※ 초등을 포함하여 관련 교과 석·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교과를 2년 이상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도 가능
- 대안교육 지도자는 해당활동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능력 소지자(자격증 및 경력증명 가능한 자)

❖ **경영의 투명성 및 재정의 건전성(소요재정 확충방안)**

- 자체 예산 투입 및 사용 계획(임대료 지급 능력)
- 사업비 사용 계획 및 실행 계획
- 자가 건물 또는 2년 이상 임대 조건 증빙 서류 등
-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운영 능력 및 경력

❖ **기타사항**

- 기존 운영기관 중 운영상의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제외
(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함)

6. 비용 추계

- (총예산) 517,000천 원(초등1학급, 중등5학급)
 - 초등 1학급*67,000천 원=67,000천 원(학급당: 10명)
 - 중고통합 5학급*90,000천 원=450,000천 원(학급당: 15명)
 - ※ 긴급 위기 학생 발생시, 정원의 20%(기관별 3명추가)까지 수시 위탁 가능
- (학급당 소요예산 산출근거 예시)

(단위: 천원)

학교급	항목	예산액	산출식	비고
초등	강사비	48,640	40,000원×38시간×4주×8개월	수업강사, 행정정보조강사 등
	학생급식비	16,000	10,000원×10명×20일×8개월	
	학생간식비	480	3,000원×10명×2회×8개월	
	프로그램운영비	1,000	12,500원×1회×10명×8개월	연간계획에 의거 추진
	기타 (소모성경비)	880	110,000원×8개월	전기세, 인쇄용지, 학습준비물 등
	합계	67,000		
중고통합	강사비	55,040	40,000원×43시간×4주×8개월	수업강사, 행정정보조강사, 생활상담 강사비 등
	학생급식비	28,800	10,000원×18명×20일×8개월	
	학생간식비	864	3,000원×18명×2회×8개월	
	프로그램운영비	3,600	12,500원×2회×18명×8개월	연간계획에 의거 추진
	기타 (소모성경비)	1,696	212,000원×8개월	전기세, 인쇄용지, 학습준비물 등
	합계	90,000		

7. 동의 요청 사항

-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8. 기대 효과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부적응 치유와 학교 적응력 향상 기회 제공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을 통해 학교 복귀 지원
-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내실 운영을 통한 위기 학생의 학습권 보장

9. 참고 사항

- (참고1) 관련 법령
- (참고2) 2027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개요)
- (참고3) 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현황 및 위탁 절차
- (참고4) 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실적
- (참고5) 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성과평가 및 성과공유회 자료

참고1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나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위탁)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4조(교육감의 책무)

-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상담·치유·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진로·직업·문화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8.10., 2018.8.10., 2022.12.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2.12.20.>

참고2

2027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계획(개요)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항 목		주요내용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지정 기간 / 지정규모		■ 2027. 3. ~ 12. / 초등 1학급, 중등 5학급						
지정 절차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모 및 접수 2027.1~3.	→	공모 심사 2027.1~3.	→	지정 및 업무협약 2027.1~3.	→	위탁교육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2027.1.~
위탁 교육 기관 운영 사항	기본 사항	■ 위탁기간: 1학기(4.1.~7.31.), 2학기(9.1.~12.31.) 학기제 ■ 학급당 인원수: 초 10명 이내, 중등 15명 내외						
	위탁 대상	■ 세종시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학업중단 위기로 학교복귀 지원을 위한 위탁교육이 필요한 학생						
	위탁 절차	학교 상담 3회 이상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심의 교육청 공문발송	→	교육청 대안교육 위탁준비 디딤돌 프로그램 (중등 3,4,5,8,9월) - 위탁기관 정원 내 선정 위탁결정(학교공문) 및 위탁기관 배정 및 연계	→	위탁기관 위탁준비교육 완료학생 대상 익월 1일 위탁교육개시 및 종료 · 교육청: 정산서, 보고서 제출 · 학교: 출결, 생활기록부보조부 송부		
	교육 과정	■ 초등 주당 24시간/중등 주당 24~30시간 확보 (보통교과 10시간 이상, 대안교과 10시간 이상, 창체 4시간 이상) ■ 위탁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학업 성적 관리	■ 평가는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필 및 수행평가, 성적처리, 고교학점제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학생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학적 및 출결 관리	■ 학적은 소속학교에서 관리 ■ 위탁교육기관은 학생 개인별 출결사항을 매 익월 5일까지 소속학교에 통보 및 위탁종료 후 1주일 이내 출결·생활기록부 보조부를 소속학교에 송부 ■ 학생의 희망 등 및 여러 가지 사유로 위탁교육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탁기관은 소속학교와 협의를 거쳐 수락을 중도 해지하고 교육청에 보고함						
	생활 지도	■ 소속학교장과 위탁교육기관장은 긴밀히 협조하여 위탁학생 관리에 만전 ■ 소속학교 관리자또는 담당자 1회 이상 위탁기관 방문 및 학생 관리 필수 ■ 위탁학생의 담임교사 월 1회 학생과의 소통(전화·문자·SNS)필수						
교육 환경	■ 위탁교육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학습 공간 확보(교실, 상담실, 특별실, 사무실 등) ■ 시설의 안전성 및 기관 주변환경의 적절성 확보							
지원사항		■ 교육청은 운영 보조금을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함(분기별 점검계획 수립 예정) ■ 위탁기관은 장학 및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며 권고·시정사항을 이행해야함 ■ 교육청은 매월 정산서 및 보고서를 확인 후 정산하며 불이행시 지정 취소 가능 ■ 교육청은 연말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성 검증						

참고3

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현황 및 절차

○ 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

구분	기관명	학급	정원	주소지	특화교육과정
중등 통합	사계절 대안교육센터	2	30	보람동	사계절 하모니, 사계절농장, 나도 요리사 등
	세종대안교육센터 가온누리	1	15	나성동	진로독서토론, 예술, 힐링캠프, 여행학교 등
	사이치유 대안교육센터	1	15	나성동	창의드림댄스, 긍정마음수업 등
	세종 YMCA 관창아 대안교육센터	1	15	나성동	인성교육, 스포츠 등
초등	예술중점대안교육 예노아	1	10	보람동	예술중점 피아노, 연극 등

※ 긴급(위기)학생 발생시, 정원의 20%까지 수시 위탁 가능

○ 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절차

【위탁절차 흐름도】

① 대상 선정	■ 학생 상담 최소3회(주1회) 이상 및 학부모 상담 실시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심의(초·중·고 공통)	학교
② 위탁 의뢰	■ 위탁교육 신청서 공문 제출(초·중·고 공통)	학교 ⇒ 교육청
③ 교육 안내	■ 위탁준비교육 일정 및 대상자 안내(중·고) - 위탁교육기관 정원 내 선정(정원 초과 시 순위적용)	교육청 ⇒ 학교
④ 준비 교육	■ 위탁준비교육 실시(중·고) - 3,4,5,8,9월 중 2일간(1일차 보호자 동반) 실시 - 준비교육 미 이수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 복귀	교육청 지정기관 (초등제외)
④ 수탁 결정	■ 위탁준비교육 이수 학생 수탁결정 안내(중·고) - 위탁교육기관 배정 및 안내 - 준비교육 후 익월 1일 위탁교육 개시 - 소속학생 학교 나이스 등록(학적-위탁학생관리)	교육청 ⇒ 학교, 위탁기관
⑤ 위탁 교육	■ 위탁대안교육 실시(초·중·고 공통) - 매월 출결 사항 및 특이사항 제출(학교) - 매월 정산 보고서 제출(교육청)	위탁기관 ⇒ 학교, 교육청
⑥ 위탁 종료	■ 위탁대안교육 종료(초·중·고 공통) - 위탁교육 시작 후 학기제로 운영 - 필요시 중도해지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학교) - 결과보고서(교육청)	위탁기관 ⇒ 학교, 교육청

참고4

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실적

○ 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 배정 현황(중등)

－ 상반기(총 5회차, 66명 배정)

기관	정원(명)	총배정	1회차	2회차	수시	3회차	4회차	5회차	수시	기타	현원
사계절	30	21	7	5	1	1	2	5	-	-2*	19
가온누리	15	18	6	5	1	4	1	1	-	-1**	17
사이치유	15	17	6	1	-	1	4	4	1	-	17
세종YMCA	15	10	-	7	-	2	1	-	-	-2***	8
합계	75	66	19	18	2	8	8	10	1		61

* 2명(늘벗학교 위탁) **1명(학교복교) ***1명(기관변경1, 기타1)

－ 하반기(총 1회차, 82명 배정) ※ 2026. 9. 1. 현재

기관	정원(명)	2학기총배정	6회차	수시	기타	현원
사계절	30	32	32	-	-	32
가온누리	15	20	20	-	-	20
사이치유	15	18	18	-	-	18
세종YMCA	15	12	12	-	-	12
합계	75	82	82	0		82

○ 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 현황(초등) ※ 2026. 9월 현재

－ 초등의 경우 교육청에서 배정하지 않고 학생 상담을 통해 수시 배정

기관	정원(명)	수시(상반기)	수시(하반기)	기타	현원
예노아	10	4	6	-	6

참고5**2026년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성과평가 및 성과공유회 자료****□ 성과평가 및 성과공유회 개요**

- (장소/일시)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26. 9. 17.(목), 15:30 ~ 17:30
- (대 상) 민간대안교육 위탁기관 5개 기관
- (참 석 자) 교육청 관계자, 성과평가위원*, 위탁기관 대표 및 실무자
* 총5명: 외부위원(4명), 내부위원(1명)

□ 평가결과 및 평가 기준

기관	총점/평균	평가	비고
예노아	452 / 90.4	우수	
사계절	480 / 96	매우 우수	우수기관
가온누리	466 / 93.2	우수	
사이치유	461 / 92.2	우수	
세종YMCA	434 / 86.8	우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95점 이상	85점 이상 ~ 95점 미만	75점 이상 ~ 85점 미만	75점 미만

□ 평가방법: 정성평가(70%) + 정량평가(30%) + 가점(5%)

- 정성평가(70%): 성과공유회 ※ 9월중 기관별 10분 내외 성과발표
 - 운영결과 중간 보고서(25점), 교육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25점), 성과제시 구체성 및 학생성장 우수사례, 프로그램 효과성(20점)
- 정량평가(30%): 서류검토
 - 기관 운영 적성성(10점), 예산 집행 적정성(10점), 기관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10점)
- 가점(5%): 학교정책과
 - 교육청 정책사업 협조, 우수사례 발굴, 지역사회 연계, 언론보도 등

□ 결과 활용

- (우수기관 선정) 우수기관 1개 기관 선정, 차년도 기관선정 시 고려
- (컨설팅 실시) 미흡한 기관 및 분야 개선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관 실 · 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 안 자	과장 직위 · 성명	학교정책과 오기열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민주시민생활교육담당 최근세
	담당자 성명 · 전화	장학사 김종석(044-320-2543)